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6. 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8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2.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검토 내용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9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608,956,891,780	643,165,476,064	502,826,173,013	140,339,303,051
일반회계	590,784,761,780	624,730,328,780	495,030,500,653	129,699,828,127
특별회계	18,172,130,000	18,435,147,284	7,795,672,360	10,639,474,924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6,431억 6,547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5,028억 2,617만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403억 3,393만원임.

2)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합계	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합 계	140,339,303,051	39,127,143,040	13,704,099,780	8,026,609,780	79,481,450,451
일반회계	129,699,828,127	37,454,225,040	12,723,976,240	7,998,449,760	71,523,177,087
특별회계	10,639,474,924	1,672,918,000	980,123,540	28,160,020	7,958,273,364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9년 결산상 잉여금 1,403억 3,393만원 중 명시이월액 391억 2,714만원, 사고이월액 137억 409만원, 보조금 반납금 80억 2,6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4억 8,145만원임.

○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 예산	추경재원 조정액	비 고
합 계	79,481,450,451	33,915,547,000	45,565,903,451	
일반회계	71,523,177,087	27,394,000,000	44,129,177,087	
특별회계	7,958,273,364	6,521,547,000	1,436,726,364	

· 2020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273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2,154만원을 제외한 455억 6,590만원이 2020년도 추경재원으로 조정가능한 금액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 (D=A-B-C)
합 계	25,615,418,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일반회계	23,048,065,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특별회계	2,567,353,000	0	0	0	0

-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615,418,000으로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외 9건으로 16억 8,066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6,4170만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49만 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12,371,868,290	1,324,402,495	7,521,703,895	6,197,301,400	13,696,270,785
자활기금	1,128,359,200	△165,012,840	45,667,160	210,680,000	963,346,360
노인복지기금	346,364,180	2,790,280	7,590,280	4,800,000	349,154,460
양성평등기금	394,744,960	1,992,980	7,342,980	5,350,000	396,737,940
청년미래기금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재난관리기금	3,231,094,660	444,675,340	735,136,530	290,461,190	3,675,770,000
옥외광고발전기 금	1,017,042,810	35,831,420	146,677,990	110,846,570	1,052,874,230
도로굴착복구기 금	1,606,521,260	26,468,810	1,278,770,940	1,252,302,130	1,632,990,070
중소기업육성기 금	2,961,857,400	500,607,080	4,586,097,080	4,085,490,000	3,462,464,48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23,979,920	52,514,335	56,451,335	3,937,000	476,494,25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94,364,200	△39,126,380	22,351,550	61,477,930	255,237,820
식품진흥기금	967,539,700	△36,338,530	135,618,050	171,956,580	931,201,170

-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3억 7,186만 8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75억 2,170만 4천원에
 당해연도 사용액은 61억 9,730만 1천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6억 9,627만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계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의회사무국	3,175,181	2,962,573	212,608		18,218	194,390	

-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1억 7,51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중 93.3%인 29억 6,257만 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8천원(6.7%)임.

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율	
계	3,175,181	2,962,573	93.3	212,608	6.7	
의정활동 지원	88,498	75,509	85.3	12,989	14.7	선진 의회상 정립
열린의회 운영	17,800	12,121	68.1	5,679	31.9	
의정홍보 활동전개	82,969	74,054	89.3	8,915	10.7	
구의회 청사관리	62,270	60,128	96.6	2,142	3.4	
의회비 지원	706,101	667,462	94.5	38,639	5.5	
의회장비 보강	28,800	26,951	93.6	1,849	6.4	
인력운영비	2,017,600	1,888,978	93.6	128,622	6.4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	171,143	157,370	92.0	13,773	8.0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억 1,260만 8천 원(불용율 : 6.7%)을
정책(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의 집행잔액은
7,021만 3천 원(불용율 : 7.1%)이고,
-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1억 4,239만 5천 원(불용율 6.5%)임.

2)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계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비고
계	212,608		18,218	194,390	
의정활동 지원	12,989		7,100	5,889	
열린의회 운영	5,679		4,000	1,679	
의정홍보 활동전개	8,915			8,915	
구의회 창사관리	2,142			2,142	
의회비 지원	38,639		7,118	31,521	
의회장비 보강	1,849			1,849	
인력운영비	128,622			128,622	
기본경비	13,773			13,773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억 1,260만 8천 원(불용율 : 6.7%)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821만 8천 원으로 8.5%,
- 지출잔액은 1억 9,439만 9천 원으로 91.5% 임.

- 먼저, 집행잔액 총액에서 8.5%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등 : 7,100천원
 - 개원기념행사 계획변경(재활용처리장 방문으로 대체)
 - ‘열린의회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 4,000천원
 - 하반기 의정모니터 현장 시찰 미실시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원국외여비 : 7,118천원
 - 국외출장(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관련) 미실시

-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91.5%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 5,889천원
 -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사무관리비 등 : 8,915천원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 31,521천원
 -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등 : 128,622천원

4. 검토 결과

가. 년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금액	비율(%)	
2019	3,175,181	2,962,573	212,608	6.7	
2018	3,354,711	2,890,845	463,866	13.8	
2017	3,097,819	2,829,669	268,149	8.7	
2016	3,009,787	2,871,654	138,133	4.6	

나.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율 2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율 (%)
의정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15,000	9,979	5,021	33
	국내여비	4,152	2,460	1,692	41
	국제화여비	17,500	13,002	4,498	26
열린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		1,000	100
	행사실비보상금	3,000		3,000	100
의회비 지원	의원국내여비	11,500	4,475	7,025	61
	의원국외여비	45,500	35,778	9,722	21
	의원역량개발비 (자체)	6,000	2,860	3,140	52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000	530	3,470	86

다. 검토 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2억 1,260만 8천원으로 불용율이 6.7%로 전년도(13.8%)대비 7.1% 감소하였으나,
- 일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